

제23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아동·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9월 19일

여수시장

김기남



여수시 조례 제1958호

붙임 여수시 아동·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
개정조례 1부

여수시 아동·청소년 부모 빗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아동·청소년 부모 빗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부모 양쪽”을 “부모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“아동·청소년”이란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과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.

4. “보호자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가. 본인이 미성년인 경우 : 「민법」에 따른 배우자, 4촌 이내 혈족·인척 및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후견감독인이거나,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

나. 본인이 성년인 경우 : 「민법」에 따른 배우자, 4촌 이내 혈족·인척 및 성년후견인, 성년후견감독인, 한정후견인, 한정후견감독인, 특정후견인, 특정후견감독인, 임의후견인, 임의후견감독인

5. “성년”이란 「민법」 제4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
제4조 중 “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결정이 확정될 때”를 “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 또는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단서 중 “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 신청”을 “보호자가 이를 대신”으로 한다.

제8조를 제9조로 하고,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비밀준수) 이 조례에 따라 아동·청소년의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.</p>
<p>1. “아동·청소년”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</p>	<p>1. “아동·청소년”이란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과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.</p>
<p>2. “사망한 부모의 채무”란 가족관계등록부상 <u>부모 양쪽</u>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.</p>	<p>2.----- -----부모----- -----</p>
<p>3. (생략) <u><신설></u></p>	<p>3. (현행과 같음)</p>
	<p>4. “보호자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em;">가. 본인이 미성년인 경우 : 「민법」에 따른 배우자, 4촌 이내 혈족·인척 및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후견감독인이거나,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</p> <p style="margin-left: 2em;">나. 본인이 성년인 경우 : 「민법」에 따른 배우자, 4촌 이내 혈족·인척 및 성년후견인, 성년후견감독인, 한정후견인, 한정후견감독인, 특정후견인, 특정후견감독</p>

<p><신 설></p>	<p>인, 임의후견인, 임의후견 감독인 5. “성년”이란 「민법」제4조에 따 른 사람을 말한다.</p>
<p>제4조(지원의 범위) 지원의 범위는 가 정법원의 <u>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 승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제반 법률지원으로 한다.</u></p>	<p>제4조(지원의 범위) ----- ----- <u>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 또는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 산 청산절차 종료 시</u>----- -----.</p>
<p>제6조(지원신청) ① 법률지원을 받고 자 하는 아동·청소년은 별지 제1 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<u>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 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.</u> ② (생 략)</p>	<p>제6조(지원신청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보호자가 이를 대신</u>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<신 설></p>	<p>제8조(비밀준수) 이 조례에 따라 아 동·청소년의 상속채무에 관한 법 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 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을 누설해서는 안된다.</p>
<p>제8조 (생 략)</p>	<p>제9조 (현행 제8조와 같음)</p>